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경계 변경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때 경계의 불합리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행정능률성 저하 등 여러가지 예측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조정되어야 함에도 본안은 주민불편과 행정행위의 부작용도 크게 부각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단지 종합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적고시 되어 사업시행상의 이유만으로 우리 구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북구의 입장으로 볼때 종합화물터미널 부지가 2개(사하구, 북구)에 걸쳐있어 화물터미널 입주업체 및 공부 등이 이원화 됨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내세울 수 있으나, 이는 우리구 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주업체의 이익보호와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라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북구는 우리구와 비교해 볼 때 자체수입과 면적 등에서 우세하고 종합화물터미널 편입 부지와 인접지를 경계조정 할 경우 면적 축소에 따른 재정수입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종합화물터미널 부지는 이미 북구와 사하구의 지번으로 분할되어 있어 터미널 건립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이용 주민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38만 구민을 대표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서를 채택합니다.